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나. 개정사유
 - 현실에 맞는 장학금의 지급 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함.
- 다. 주요내용
 -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를 신설(안 제5조의 2)
 -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안 제8조의 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74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를 신설 (안 제5조의 2)
-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 (안 제8조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7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u>목표액에 도달될 때</u> 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의 2 (장학금지급) 장학금은 매년 <u>10월에 지급한다.</u></p> <p>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① <u>목표액이</u></p> <p>②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제8조의2 (준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u>이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u> <u>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u></p>